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022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박 석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박상혁,
박춘선, 서상열, 송경택,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숙자, 이영실,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홍국표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12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언제든지 공무원이 이월·저축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함(안 제18조).
- 나.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함(안 제20조의4제2항 삭제).
- 다.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함(안 제24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직·숙직·방호원”을 “일직근무자·숙직근무자·방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20조의4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를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이”를 “공무원은”으로,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받을 수 있으며”를 “사용할 수 있으며”로, “받을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

개월”을 “36개월”로, “받을 수 있으며”를 “사용할 수 있으며”로, “받을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6세 이상 8세 이하”를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로, “24개월”을 “12개월”로, “입학 준비”를 “학습 지도”로, “받을”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시간을 쓴 공무원
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을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
원은”으로,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무원이 신청하면”을 “공무원은”으로,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
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을 “사용할”로 하
고, 같은 조 제9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얻을”을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를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제1호에 따
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
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로 하며, 같은 항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제24조제17항을 삭제한다.

별표 3 사망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란 다음에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	---

별표 3의 사망의 대상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한다.

별표 5 제5호나목 중 “만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및 별표 5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3조(이월·저축한 연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u>일직·숙직·방호원</u> 등의 당직 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u>일직근무자·숙직근무자·방호 직공무원</u>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15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 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 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 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

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

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

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

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

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

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

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

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

하여 부여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

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

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

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u>1년 이상 3년 미만</u>	<u>15</u>
<u>3년 이상 4년 미만</u>	<u>16</u>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 (생 략)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생 략)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 (생 략)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2. (현행 제5호와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권 보장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 4. (생략)

⑦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

----- 사용할 수
있으며-----

----- 사용할 수 있다.

⑤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

----- 12개월-----

----- 학습 지도--

----- 사용할 ---.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시간을 쓴 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일때부터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

사용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⑦ -----

공무원은 -----

----- 사용

야 한다.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2. (생략)

⑨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 ⑬ (생략)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 4. (생략)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

할 수 있다.

⑧ -----

----- 사용할 -----.

1. 2. (현행과 같음)

⑨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사용
할 ----.

⑩ ~ ⑬ (현행과 같음)

⑭ -----

사용할 -----.

1. ~ 4. (현행과 같음)

⑮ -----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제1
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⑩ (생략)

⑪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와 관련하여 인력지원한 공무원은 장시간 투·개표사무 종사에 따른 피로 회복 등을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
----- .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⑩ (현행과 같음)

<삭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4. 7. 2.)에 맞춰 상위규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¹⁾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동 개정안 제24조(특별휴가)제4항에 따라 육아시간 특별휴가의 범위가 12개월²⁾ 늘어나게 되고, 안 제24조(특별휴가)제5항 교육지도시간 사용대상자³⁾도 변경되어 비용발생의 여지가 있으나 관련부서 확인결과(서울시 행정국 인사과)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추가재정소요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 1) 저연차 공무원 연가 일수 확대,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 폐지,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등
- 2) 현행 같은 조례에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씩 특별휴가를 사용하고,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씩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동 개정안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씩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에 따라 특별휴가 범위가 12개월 늘어나게 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 3) 현행 같은 조례에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씩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나 동 개정안에서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 사용 대상자를 변경하고, 범위도 24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함
- 4) 관련부서 확인결과(서울시 행정국 인사과) 통상적인 연가 대직업무수행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체인력 충원에 따른 별도의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매일 출·퇴근을 하는 육아시간 특별휴가 특성상 임신출산휴가 등과 같은 특별휴가(※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는 2024년 기준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와 차이가 있으며, 현재까지 육아시간 특별휴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요청 또한 없으므로 향후 비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낮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